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7호로 2023년 2월 9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및 제7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2. 3. ~ 2023. 2. 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 로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10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시 준수사항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